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□ 변경 사항 : 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④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7. 13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2. 8. 31. 기준	2023. 5. 31. 기준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3. 3. 6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2. 8. 31. 기준	2023. 6. 30. 기준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2. 8. 31. 기준	2023. 6. 30. 기준
가. 운용전문인력			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 요 투자 대상]	오탈자 정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 월까지(법 시행령 제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 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한 것으로 봄 〈신 설〉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<u>의 2</u>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 요 투자제한]	기재 정정 오탈자 정정	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▶ (생 략) -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 대출 -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모 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(가) (생 략), 금융투자업규 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 조제 3 항제 3 호 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▶ (생 략) -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-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모 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(가) (생 략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 조제 3 항제 3 호 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2. 8. 31. 기준	2023. 5. 31. 기준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<u>아래 ※별첨 참조</u>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<u>아래 ※별첨 참조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5) 퇴직연금제도의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③ 세액공제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(<u>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 원 초과)</u> 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300 만원</u> 이하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700 만원</u>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③ 세액공제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900 만원</u> 한도로 12%(<u>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</u>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3. 3. 6. 기준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증권대여 및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내역 기재 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〉 및 〈주식의 매매회전율〉 기재
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3. 3. 6. 기준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3. 3. 6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3. 6. 30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 24 기(2021.12.31) 제 23 기(2020.12.31)	제 25 기(2022.12.31) 제 24 기(2021.12.31)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3. 6. 30. 기준</u>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②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(2) 수시공시 ②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
※ 별 첨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
공제제도	<table><tr><th>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</th>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세액공제율</th></tr><tr><td>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</td><td>600만원</td><td>15%</td></tr><tr><td>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</td><td>(900만원)</td><td>12%</td></tr></table>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
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						
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						
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							
※지방소득세 별도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								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							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						
해지가산세	없음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							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50세 이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	600만원 (900만원)	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	300만원 (700만원)			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